



석유시론

정유사의 '91 손실요인과 휘발유 가격조정

朴永德
(油公 업무부차장)

1. 머리말

지난 10월말부터 약 보름동안 국내 매스컴에
는 정유업계의 휘발유 가격인상과 관련
한 보도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과정에서 업계와 정부는 일부 언론의
가혹한 비난과 질타대상이 되기도 하였지만, 국내
정유업계가 올해 수천억원의 손실요인을 안은 채 심
각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는 실정이 다소나마 국민
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정부의 현행 유가관리체제 하에서 발
생되고 있는 정유사 손실요인의 실상을 살펴보고,
휘발유 가격조정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보도에서 오
해 내지 왜곡된 저간의 사정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정유업계는 9월 이후 원유도입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휘발유, 등유등
자유화 유종은 손실보전조치 못받게
되는 코너에 몰리게 되었다.**

**정유사라고 자유화 유종의 가격인상이
물고 을 불가당국과의 마찰이나 여론과
소비자의 불만을 내다보지 않았겠는가?**



2. 정유사의 '91년도 손실요인

정부의 현행 유가관리제도는 정유5사 전체로 자
기자본이익율을 세전 16.5%로 규제하는 정유사 이
익통제를 본질로 하여 5사 평균으로 총수익과 총비
용이 동일하도록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에 따
라 정부는 원유비, 원유도입금융비, 정제비 등 비용
요소와 판매복합단가로 표시되는 수익요소가 같게
되도록 기준유가들을 설정하여 유가를 관리하고 있
다. 그동안 많은 보도를 통해 일반인에게도 친숙해
진 기준원유가 17.70\$/B와 기준환율 730₩/\$은
바로 현행 유가들에 반영된 원유비 항목중의 원유가
격(FOB)과 환율인 것이다.

이제 기준유가들에 반영되지 못하여 발생하고 있
는 정유업계의 금년도 주요손실요인을 살펴본다.

①정부는 유가구성요소중 그 비중이 크고 변동상
황이 쉽게 파악되는 원유비에 대하여는 국내도입 원
유가격과 기준원유가격의 차이를 매월 석유사업기
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그런데 9월 이후에는 국제원유가 및 환율의 급상
승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유사의 실도입원유비가
기준원유비를 초과하여 負(Minus)의 기금요인, 곧
정유사 손실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12월 도입원유
가를 19\$/B, 연말 환율을 780₩/\$로 예상할 경우
9~12월간 원유도입 누적손실 규모는 약 1,000억원
에 이를 전망이다.

②원유도입금융비는 원유도입자금의 차입에 따른
금리비용과 원유구입일부터 원유대금 지급일까지의
환율변동에 따른 비용인 환차손(익)을 말한다. 美달
리화로 결제되는 국제원유거래에는 워낙 막대한 자
금이 소요되므로 세계의 모든 정유사는 연지급 수입
금융(유전스금융)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
전스이자와 환차손(익)이 당연히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올해의 유가들에는 유전스이자는 반영되

어 있으나 유전스 환차손(익)은 반영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91년초에 719.2₩/\$로 시작된 환율이 지난 10월말에는 754.8₩/\$까지 급등하였는 바 이에 따른 정유업계의 유가 미반영 유전스환차손이 이미 1,100억원을 넘어섰으며 앞으로 경상수지 악화추세의 지속에 따라 환율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유가 상승효과와 복합되어 유전스 환차손은 연말까지 2,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③ 정제비는 정유사의 제조경비, 수송저유비, 일반관리판매비, 영업외순비용 및 허용이윤을 통칭한 비용항목으로서, 정부는 전년도의 정유 5사 결산실적을 정밀사정한 결과를 기초로 당해년도의 표준정제비를 산정·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표준정제비가 확정되는 시점은 정유사의 결산 및 정부의 사정·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시 매회계연도가 지난후 익년 6월전후가 된다. 올해의 경우 정부는 '90

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한 '91년도 유가반영 표준정제비를 2,720₩/B으로 확정하여 지난 7. 1. 유가인하와 함께 새로이 설정된 유가들에 이를 반영시켰다. 유가관리상 표준정제비는 회계년도별로 관리되는 개념이므로 뒤늦게 확정된 '91년도 표준정제비를 '91년 상반기 실적에도 소급반영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유가제원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보전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91상반기의 정제비 미반영 손실분은 819억원으로 국내정유업계의 '91년도 허용이익의 64%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만약에 이 손실분을 정부가 유가부담요인으로 인정(즉, 손실보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정부가 매년도의 유가정산 및 정제비 현실화 작업을 완료하는 시점에 따라 그 해의 정유사손익이 좌우되는 불합리성이 초래되고 이에 따른 행정의 자의성, 무원칙성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현재 정유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손실 요인은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원유가격 상승 및 원화환율절하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정유사가 손실요인이 없는데도 부당한 이익추구를 위하여 가격인상을 담합했다는 비난은 부당하다. 만약 가격 자유화가 되지 않고 정부가 가격고시를 계속했다라도 이번의 가격 인상은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였으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3. 휘발유가격 조정의 배경

정유업계는 9월과 10월 2차에 걸쳐 위에서 살펴본 '91손실요인에 대한 보전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건의내용은 석유협회보 '91. 10월호 참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방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정부는 업계와의 협의과정에서 가격자유화조치의 본래 취지를 살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있지 않는 자유화유종에 대하여는 향후 원유도입 손실보전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다시 말해 가격자유화유종은 원가변동요인에 연동하여 정유사가 자율적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명분상으로도 원유가 및 환율상승

에 따른 손실요인을 정부가 보전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공은 정유사쪽으로 넘어왔다. 정유업계는 9월 이후 원유도입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휘발유, 등유 등 자유화유종은 손실보전조차 못받게 되는 코너에 몰리게 된 것이다. 정유사라고 자유화유종의 가격인상이 몰고 올 물가당국과의 마찰이나 여론과 소비자의 불만을 내다보지 않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업계는 휘발유 가격인상이라는 고육지책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원유가 및 환율이라는 통제불가능 외생변수로 인한 원가상승부담을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자체흡수하기에는 한계에 달했고, 연초부터 누적된 막대한 손실로 빚어지고 있는 경영압박을 다소나마 완화코자

한 자구책에서 나온 결단이었다. 또한, 가격인상을 뒤로 늦추더라도 결국 누적인상요인이 한꺼번에 현실화됨으로써 물가에의 충격이나 소비자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고, 그만큼 정유사가 받게 될 비난의 강도도 크게 될 것이라는 점도 감안된 어려운 결정이었다.



4. 정유사비판에의 유감

사물은 보는 입장에 따라 여러가지로 해석되고 판단되는 법이다. 우리는 매스콤을 통해 걸프전쟁이나 소련 쿠데타실패 같은 거창한 세계사적 사건부터 일상생활의 소소한 주변사에 이르기까지 알게 되나, 매사에 전문가가 아닌 이상 대체로 매스콤이 보는 시각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매스미디어에 신속정확한 보도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평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보도자세를 저널리즘이라고 특정시각과 목적을 지닌 보도성향을 *Sensationalism*이나 *Propagandism*이라 일컫는다고 필자는 들었다.

11월 정유업계의 휘발유가격 조정과 관련한 언론 보도는 진실전달과 공정비판이라는 저널리즘에 대체로 충실했던 것 같으나 일부 언론의 보도자세는 필자가 보기에 *Sensationalism*에 가까운 것이 아니

었나 싶어 실망스러웠다.

이대로 지나치기에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정유사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남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필자의 견해를 적어보고자 한다.

첫째, 유가자유화초기 가격인하요인이 있었음에도 정유사는 가격을 인하하지 않았다는 비난이다. 자유화초기당시 시장경쟁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정부의 설명과 모정유사의 가격인하 발표·변복이라는 사례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작부터 이를 공개해명하지 않았던 정유업계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판매가격은 원가요인과 경쟁요인에 의해 변동되는 것으로 각기업의 경영전략의 수익성(손익)과 성장성(시장점유율)중 어느 것을 지향하는가에 크게 좌우되는 법이다. 정부의 자유화당시

가격인하에 상응하는 일반적인 시장여건하에서 경쟁요인의 측면만 강조된 것으로 사실 9월 11일 정유업계의 대정부 손실보전 건의에서 보듯이 막대한 손실요인을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실정에서는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여력은 없었다고 할 것이다.

더우기 정유사의 원가측면에서 보면 8월까지 국내기준원유가보다 싸게 들어온 원유에 대하여는 정부가 그 차액만큼 기금으로 정수하였기 때문에 가격인하요인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다.

둘째, 정유업계의 가격담합이라는 비난이다. 가격담합이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그런데 정유업계의 휘발유 가격조정의 경우 정부의 자유화가격 관리지침과 행정지도에 의거하여 객관적 기준하에 정당하게 추진된 것으로 무조건 가격담합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업계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웃나라 日本의 경우 작년 9월부터 걸프사태대책으로서 통산성 행정지도지침에 따라 원유가격과 환율에 연동하여 모든 정유사들이 매월별로 석유제품가격을 조정해 오고 있는데 이를 日本언론이 가격담합행위로 비난했다는 보도는 접한 적이 없다.

또한 가격담합의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정유업계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손실요인은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원유가격상승 및 원화환율절하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정유사가 손실요인이 없는데도 부당한 이익추구를 위하여 가격인상을 담합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즉 가격자유화가 되지 않고 정부가 가격고시를 계속 했더라도 이번의 가격인상은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였으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세째, 정부가 업계의 이익만 보호하고 정유업계는 정부가 보장해 주는 이익을 향유하면서 불공평하게 다른 업종보다 편안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워낙 해묵은 비난으로, 1960~70년대 메이저 경영시대의 선입견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현행 유가관리제도의 내용이나 운영과정을 다시 들여다 보거나 국내 정유사이익율을

국내 여타 에너지업종이나 정부의 이익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기업의 이익율 또는 선진국 정유사들의 이익율 추이와 비교해 보면 그 대답은 자명해 질 것이다. 정부는 정유사이익이 적어도 얼마이상 나도록 「보장」해 주지도 않거나 많아도 얼마이상은 결코 안된다는 「허용」이익조차 제대로 나게 해준 적도 없다.

우리나라는 매년 석유수요증가율이 20% 내외에 이르는 세계최고수준을 계속 나타내고 있으며 수요구조도 급속히 경질화·저유황화되고 있다. 석유제품의 안정공급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는 정유사로서는 이러한 추세에 대처하여 1기당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중질유 분해 및 탈황시설 등 각종 생산설비와 입출하·저장관련 물류시설, 그리고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지나친 이익통제에 따른 사내유보재원의 제약 및 이로 인한 투자조달능력의 한계로 이러한 투자사업이 제대로 잘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석유류 안정공급 확보차원에서 현행 정유사이익규제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석유협회의 각종 세미나나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누차 해명된 것이고, 업계는 기회있는대로 현행 이익통제형 유가관리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이다.

5. 맺는말

우리 정유업계는 이번에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쟁촉진체제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데 가일층 힘을 기울이는 한편, 원유도입비 절감 등을 통해 보다 싸게 양질의 석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유가자유화에 따른 궁극적 효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글이 최초의 휘발유가격 자율조정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과 오해를 줄이고, 정유업계의 어려운 경영실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

*註: 올해의 경우 정부는 3~8월 기간중의 기금정수요인(2,279억원)으로 Gulf사태 기간중 발생한 정유사손실 중 미보전분(3,244억원)을 상계처리하였다.